

# 2014년도 정기세미나 종합자료집

2014. 10.

연속교육팀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목 차

---

▶ 인사 말 .....	5
▶ 주제 발표 < 공인보도와 인격권 >	
I. 서론 .....	9
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1
1. 미국 .....	11
2. 독일 .....	17
3. 우리나라 .....	18
4. 소결 .....	26
III. 공인의 사생활 공개 범위와 한계 .....	28
1.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공인 이론 .....	28
2. 독일의 인격영역론과 시대사적 인물 .....	32
3.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	41
4. 사생활의 보호범위 .....	43
5. 소결 .....	49
IV. 결론 .....	50
▶ 지정 토론 .....	53
▶ 연구 발표 .....	73
▶ 종합 토론 .....	89



---

#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곳 문경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공인보도와 인격권’입니다. 공인보도란, 공인에 대한 보도, 공인과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 보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기사라든가 올 여름 제주지검장 관련 보도,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공인보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연예인, 스포츠스타, 인기 소설가 등 유명한 관련 보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공인보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공인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인보도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본인과는 무관한 일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또 도를 넘은 사생활 공개는 그 대상이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범위에 있어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 수인의 폭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왜곡보도,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한계선입니다. 과연 공인보도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세심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의 범주 또한 문제입니다. 누가 공인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인의 범주는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공인으로 보는 것에는 큰 이론이 없는 것 같

지만 연예인, 스포츠스타, 지명도 높은 기업가, 문인, 예술가 역시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언론보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되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성,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의 위치에 있지 않은 유명인들이 공인인지, 그들에 대한 현재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논의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공인보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다뤄볼 것이며, 언론인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재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형 교수님의 세심한 연구와 발표로 인해 오늘 세미나가 밀도 있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아주신 유의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의 지정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천 부장님, 권오승 중재위원님, 이재진 교수님, 유제민 판사님들께서 발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세미나에 원근 각지에서 많은 중재위원님, 기자, 전문가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서울을 떠나 이곳 문경까지 먼 길을 내려온 만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1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용 상

**주제 발표**

---

## 공인보도와 인격권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인보도와 인격권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론

1. 언론에서 유명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사에 관한 보도는 일반인에 비하여 대중의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유명인사 등 공인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공인 관련 조정신청 사건이 571건이나 된다(별표 참조). 법원에 바로 명예훼손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송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공인 보도에 관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문제이기도 하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 피해자가 공인<sup>1)</sup>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 첫 번째 문제는 누가 공인인가이다. 공인은 사인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공인에 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공인을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

1) 여기에서 공인은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류할 것인지 문제된다. 두 번째 문제는 공인의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발생하는가이다.

2. 먼저 공인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인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공인 개념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 물의를 빚은 것을 사과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연예인도 공인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sup>2)</sup>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공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인이론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국무총리나 도지사 등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이었다. 그러나 공인은 그보다 넓은 개념이다. 판례에서 말하는 공적 인물이나 공적 존재를 포함한다. 공적 인물을 줄여서 공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에서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배우 윤정희, 대통령의 아들, 유명 개그우먼을 공적 인물이라고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단체이기 때문에 공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존재라고 한다.

유명한 사람을 공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유명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는 공적 인물에 속한다고 한 판결이 있다. 이와 달리 연예계에서 은퇴한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전직 연예인은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는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sup>3)</sup>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3) 따라서 공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한편 흉악범에 대해서도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 가령 흉악범이 어떻게 공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흉악범을 공인에 속한다고 본다면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흉악범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물론 공인은 법률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용어와 달리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 개념은 독일법에서 형성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격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이나 ‘명예훼손’ 등 개별적 유형으로 나누어 해결하고 있다. 독일에서 일반적인 인격권이 승인된 것은 1950년대이다. 이때 ‘인격’은 일반적인 용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인격이 훌륭하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인격은 훌륭한 품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인격권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를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인격권을 가진다. 흉악범이나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가진다. 그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가졌는지 나쁜 마음씨를 가졌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인격권이다.

4. 이 글에서는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공인 이론이 발달한 미국법과 우리나라의 인격권 법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독일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인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 미국

공인 이론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공인 이론을 살펴보고 사인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한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 (1) 미국 불법행위법 리스트이트먼트의 규정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공인 이론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불법행위법 리스트이트먼트 제2판<sup>4)</sup> 제580A조는 “공무원(public officials)과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미국법학원에서 판례를 정리하여 발간한 것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에 관하여 그 지위에서의 행위, 자질 또는 역할과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적 의사표시를 공표한 자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 (a) 진술이 거짓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 (b)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행위를 한 경우”

위 규정 다음에 있는 제580B조에서는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인,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의 공적 지위에서의 행위, 자질 또는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수히 사적인 사안에 관하여 허위의 명예훼손적 의사표시를 공표한 자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 (a) 진술이 거짓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b)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행위를 한 경우
- (c)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

## (2) 뉴욕타임즈 판결과 그 이후의 전개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보통법상의 명예훼손 법리에 따라 엄격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sup>5)</sup>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획기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민권운동가들이 1960. 3. 29. 뉴욕타임즈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앨라배마주의 수도 몽고메리에서 주도한 비폭력시위에 가담한 흑인들에 대한 테러·협박과 경찰의 가혹한 진압방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경찰국장인 설리반(Sullivan)이 신문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광고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앨라배마주 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50만불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앨라배마주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5) 376 U.S. 254, 280 (1964).

이 판결은 허위사실의 공표는 자유로운 토론에서 불가피하고 언론의 자유가 생존할 수 있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공표도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 판결에서 채택한 현실적 악의 기준은 공무원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후 공적 인물로 확대 적용되었다.<sup>6)</sup>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공인인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즉, 언론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공적 인물은 피고가 거짓이고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그 허위성에 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채 게재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sup>7)</sup> 무모한 무시(reckless disregard)는 보통법상의 무모함(recklessness) 또는 보통법상의 중과실(gross negligence)과 동의어가 아니고, 발행인이 “출판물의 진실성에 관하여 실제로 진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sup>8)</sup> 나아가 민사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증거의 우월 기준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적 인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은 설득력 있고 명백하게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sup>9)</sup> 실제로 공인으로 판단된 사람 중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sup>10)</sup>

미국의 판례에서 공인 이론을 채택한 이유로는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넓게 인정할 경우에 언론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여 이른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인의 활동을 보도하는 데 언론매체에 대한 보호를 적게 하면 공인에 관한 보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공인에 대한 정확한 보도의 양도 줄어들게 할 것이다. 뉴욕타임즈 판결은 최대량의 진실이 배포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의 책임을 제한한 것이다.<sup>11)</sup>

---

6)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64-65 (1967);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7)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64-65 (1967).

8) St. Amant v. Thompson, 390 U.S. 727, 731 (1968).

9)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85-86 (1964).

10)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 (1988)에서는 성직자인 공인을 패러디한 사건에서 고의적인 감정적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현실적 악의 기준을 적용하여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188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판결을 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11) Frederick Schauer, Public Figures, 25 Wm. & Mary L. Rev. 905, 909 (1984).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의견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정치적 비평에 속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설리번이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뉴욕타임즈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보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설리번과 같은 공무원이 공적 행위에 대한 비평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에 대한 모든 구제수단을 없앤다면 법이 진실의 유포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즈 판결은 진실의 배포를 극대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공인 이론이 적용되는 한계적인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Ocala Star-Banner Co. v. Damron 판결<sup>12)</sup>에서 레너드 댄런(Leonard Damron)은 소도시의 시장이자 조세사정인(tax assessor) 후보였다. 형제인 제임스 댄런(James Damron)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신문 편집자는 착오로 위증죄로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이 레너드 댄런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신문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레너드 댄런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그는 조세사정인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댄런은 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허위이자 명예훼손적인 위 기사가 공무원 및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위 기사는 명백하게 New York Times 판결의 면책특권(privilege)의 범위에 속한다. 신문사가 명백히 극도로 부주의하였지만, 현실적 악의가 없었으므로, 레너드 댄런에게는 구제수단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적 인물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자. Rood v. Finney 판결<sup>13)</sup>에서 플로이드 루드(Floyd Rood)는 특히 “하이웨이 골프(highway golf)”라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한 프로 골퍼이다. 루드는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에 반대하는 전시를 하면서 전국을 여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으려고 하였다. 루드는 언론

---

12) 401 U.S. 295 (1971).

13) 418 So. 2d 1 (La. Ct. App.), cert. denied, 420 So. 2d 979 (La. 1982), cert. denied, 103 S. Ct. 1254 (1983).

보도자료에서 하이웨이 골프를 “(일반적인)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루드는 이 보도자료를 UPI 기자에게 주었는데, 그는 이 이야기를 휴스턴 신문(Houston Chronicle) 등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휴스턴 신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게재하면서 루드가 “자신의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창안한” 스포츠라고 보도하였다. 과실로 한 단어가 바뀌었고, 플로이드 루드는 약물중독자로 기사화되었다. 루드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공인으로 판단하여 약식판결로 패소하였다. 루드가 휴스턴 신문의 과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 판결과는 달리 위 두 판결은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해야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3) 공인과 사인의 구분

미국의 공인 이론은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라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명예훼손책임의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공인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하지만, 사인은 언론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sup>14)</sup> 따라서 공인과 사인의 구별은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은 사인보다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아 그 내용을 반박할 수단이 있다. 둘째, 공인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공중의 주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

14) 다만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판결에서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고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표현 내용이 공공의 중요한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그 후의 판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 (4) 공무원과 공적 인물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또한 경찰관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공직 후보자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무원을 공무원이 아닌 공적 인물과 구별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나 미국 판례에서 이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공무원(public officials)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즉, 공인으로 판단된 사람은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가수 마이클 잭슨이나 지휘자 레오나드 번스타인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통령이나 상원의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sup>15)</sup>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sup>16)</sup> 공적 인물에 대한 논평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논평만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공무원이 아닌 공인의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누가 공적 인물이고 누가 아닌지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 (5) 전면적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

공적 인물은 다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sup>17)</sup>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전면적(무제한적) 공적 인물(unlimited/pervasive/all-purpose public figure)과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vortex public figure)의 구분이다. 제한적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관련된 분야에서만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된다.

15) Schauer(주 11), 908.

16)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55 (1967)에서 Harlan 대법관의 견해: Schauer(주 11), 932.

17) 박용상(주 10), 253면은 공무원, 전면적인 공적 인물,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 인물, 논쟁 사안의 제한적인 공적 인물, 제한적인 공적 인물, 타의에 의한 공적 인물, 사인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전면적 공적 인물은 그의 이름을 관계된 사람들의 다수가 즉각 알 수 있고 그의 활동을 그 집단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그러한 사실 등으로 그의 의견이나 행위가 그 집단의 사람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고 고려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공적인 인물로 취급되는 사람을 말한다. 전국적인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제한적 공적 인물은 관련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적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을 말한다.<sup>18)</sup> 제한적 공적 인물은 특정한 공인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적 논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적 인물로 취급된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이에 속한다.

한편, 공인을 자발적 공적 인물과 비자발적인 공적 인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비자발적인 공적 인물에는 공인의 가족이나 범죄의 피해자 등을 들 수 있다.

## 2. 독일

독일에서는 성명권,<sup>19)</sup> 초상권<sup>20)</sup>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한다. 한편 개인의 명예나 인격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에 관한 이론이 발달하였다. 독일민법 제정 당시에는 일반적 인격권은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 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는 소유권 등 절대권을 가리킨다고

18)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1976).

19) 독일민법 제12조.

20) 독일 조형예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저작권법이라 한다) 제22조 이하.

보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독재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드러났고 1949년에 제정된 독일(당시는 서독을 가리킴) 기본법에서 인격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독일 연방대법원이 일반적 인격권을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로 승인하였다.<sup>21)</sup> 개인의 명예, 인격상, 사적 영역(Privatsphäre) 등을 침해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sup>22)</sup>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이라고 해서 그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형량을 할 때 공인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3.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의 요건이 무엇인지, 공인의 경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방법

민법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하여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21) 이에 관하여는 BGHZ 13, 334(독자의 편지 사건); BGHZ 26, 349(Herrenreiter 사건);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13. Aufl., 1994, S. 491ff.;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2. Aufl., 1967, S. 525; J. Helle, Besondere Persönlichkeitsrechte im Privatrecht, 1991, S. 3ff. 참조.

22) 사적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은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허위보도의 경우에는 항상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1988년 판결은 허위보도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sup>23)</sup>

이 법리는 편의상 ‘공익성’과 ‘진실 또는 상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성’은 보도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보도의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도내용이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4)</sup>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상당한 이유의 존부는 언론보도의 내용,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언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sup>25)</sup>

상당성 법리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논란이 있다.<sup>26)</sup>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법행위는 매우

23) 대판 1988. 10. 11, 85다카29(집 36-3 민, 1). 동지: 대판 1996. 5. 28, 94다33828(공 1996, 1973); 대판 1997. 9. 30, 97다24207(공 1997, 3279) 등 다수.

24) 대판 1996. 10. 11, 95다36329(공 1996, 3297); 대판 1998. 7. 14, 96다17257(공 1998, 2108); 대판 2002. 1. 22, 2000다37524, 37531(공 2002, 522).

25) 대판 1997. 9. 30, 97다24207(공 1997, 3279).

26)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25면.

포괄적인 개념이다. 판례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형법 제 31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상당성 법리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가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를 형법 제310조보다 넓게 인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판례법리를 수용하여 언론보도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론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려면 먼저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보도내용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또한 보도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종래 판례는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위 규정에서는 ‘상당한 이유’라는 용어 대신 ‘정당한 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미국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에게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sup>27)</sup> 그러나 대법원은 현실적 악의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고 한다.<sup>28)</sup>

27) 이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2000. 6), 32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는 박용상(주 10), 44면; 한위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 2002, 611면이 있다.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연구,” 언론중재 2014년 봄호는 “공인 이론이 누구나 알기 쉽게 유형별로 오보의 보호 범위를 정하려고 한 본래 취지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28) 대판 1997. 9. 30, 97다24207(공 1997, 3279); 대판 1998. 5. 8, 97다34563(공 1998, 1575); 대판 2004. 2. 27, 2001다53387(공 2004, 594).

(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도 개별적인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사인(私人)의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다.

헌재 1999. 6. 24, 97헌마265<sup>29)</sup>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①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 ②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掲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眞僞)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29) 헌집 11-1, 768.

그 후 대판 2002. 1. 22, 2000다37524, 37531(집 50-1, 민 43)은 “일반론”이라는 제목 아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종래의 판결을 종합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인용하고자 한다.

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②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책임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는 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하여 언론의 입증부담을 완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나 의견과 섞여 있는 것으로 논쟁과 평가 없이는 정치적 이념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30)</sup>

30)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2005. 3), 362면.

(다) 위 판결 이후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관하여 위법성을 완화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왔다.<sup>31)</sup> 대판 2002. 12. 24, 2000다14613(공 2003, 425)<sup>32)</sup>은 위 ②항의 2002년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판 2004. 2. 27, 2001다53387(공 2004, 594)은 검사가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보도한 방송에 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아가 공직자의 청렴성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법성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즉, “...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sup>33)</sup>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sup>34)</sup> 그러나 언론보도가 공직자

31) 가령 대판 2002. 12. 24, 2000다14613(공 2003, 425); 대판 2003. 1. 24, 2000다37647; 대판 2003. 7. 8, 2002다64384(공 2003, 1683); 대판 2003. 7. 22, 2002다62494(공 2003, 1770); 대판 2003. 9. 2, 2002다63558(공 2003, 1936). 대판 2004. 2. 27, 2001다53387(공 2004, 594); 대판 2007. 12. 27, 2007다29379; 대판 2013. 2. 14, 2010다108579.

32)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박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언론과 법 제2호 (2003. 12), 333면 이하 참조.

33) 대판 2003. 7. 8, 2002다64384(공 2003, 1683); 대판 2003. 7. 22, 2002다62494(공 2003, 1770); 대판 2003. 9. 2, 2002다63558(공 2003, 1936).

34) 다만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판 2009. 4. 9, 2005다65494(공 2009, 608).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sup>35)</sup>

(라) 우리나라 판례가 미국의 공인 이론 또는 현실적 악의론을 채택한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나 공적 존재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악의적인 경우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려고 한 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공인 이론 또는 현실적 악의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미국의 공인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우리 판례에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른바 내용(content) 기준 판단방식이다. 미국의 공인 이론에서는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위(status) 기준 판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우리 판례는 특히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공인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에 비하면 매우 좁다. 셋째, 미국의 공인 이론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는 언론사가 허위를 알았거나 허위인지를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으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악의적’이라는 표현은 나쁜 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판례의 ‘악의적’과 미국 판례의 ‘악의’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35) 대판 2007. 12. 27, 2007다29379(공 2008, 127); 대판 2001. 11. 9, 2001다52216; 대판 2003. 9. 2, 2002다63558; 대판 2006. 5. 12, 2004다35199; 대판 2013. 2. 14., 2010다108579 등 참조.

#### 4. 소결

(1)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미국의 공인 이론은 신분 기준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언론기관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내용 기준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개별적인 이익형량을 통하여 언론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인격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sup>36)</sup> 우리나라도 이익형량을 통하여 언론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공인 이론을 채택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언론의 책임이 부정될 것이다.

(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공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첫 번째 이유로는 헌법 차원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우리 헌법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37)</sup>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한 없는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공인 이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태도는 이와 다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실체법상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이나 언론피해구제법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위법성이나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공인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개념을 위법성 판단의 중심으로 내세운 것이다. 미국의 공인 이론에서는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라는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점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언론피해구제법에서 명시적으로 상당성 법리를 채택하는 입법적 결단을

36)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이라고 해서 그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이 달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형량을 할 때 공인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37)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8) 형법 제307조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미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 비하여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언론기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대신 상당성 법리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절차법, 즉 민사소송법상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피해자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승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 번째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명예를 중시하였다.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유교문화의 영향도 크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역사적으로 언론 자유가 정치와 사회제도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었다.

(3) 우리나라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형량을 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공인 이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보도내용이 공인에 관한 것인지 사인에 관한 것인지, 공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공적 영역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sup>39)</sup>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주요 유형으로는 공인의 정치적 이념, 좌와 우의 이념문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또는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관하여 언론의 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인으로서 명예훼손적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39) 박용상(주 10), 258면.

### Ⅲ. 공인의 사생활 공개 범위와 한계

#### 1.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공인 이론

##### (1)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

(가) 프라이버시권은 1890년 미국에서 발표된 기념비적인 논문<sup>40)</sup>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이것은 처음에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sup>41)</sup>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타인의 사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입,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의 도용,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공표, 공중에게 타인에 대한 잘못된 인상(false light)을 부당하게 심어주는 공표가 그것이다.<sup>42)</sup> 위 4개의 유형 중에서 언론보도와 관련된 것은 주로 사생활 공표와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공표이다.

(나)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공표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사적 사실들의 공개가 사적 공개가 아니라 공적인 공개이어야 하고, ② 공중에 공개된 사실들이 공적 사실이 아니라 사적 사실이어야 하며, ③ 공개된 사실이 통상의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이어야 한다.<sup>43)</sup> 미국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Torts)는 제652조 D에서 “사생활의 공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을 공표한 자는 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공표된 사실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a)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불쾌하고,

40) Samuel D. Warren and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1890) 4 Harv.L.Rev. 193.

41) 이것은 Cooley 판사가 사용한 말이라고 한다. Prosser/Keeton, The Law of Torts, 5th ed., 1984, p. 849.

42) 이것은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1960)에서 제안된 것으로, 위 본문의 내용은 미국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652A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한 것이다.

43) 위 ②의 요건에 관하여는 사적 사실과 공적 사실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어떤 사실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더라도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③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다.

(b)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닌 것.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에 관한 기사나 사진이 원고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감정적인 괴롭힘을 주는 경우에도 보도할 가치가 있다면 공표를 할 수도 있다.<sup>44)</sup>

(다) 미국에서는 타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도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과 구별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바이런이 지은 시가 아닌데도 바이런이 지은 시라고 발표한 사례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미국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652E조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공표”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공표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a) 타인에 대하여 심어준 잘못된 인상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있어 심하게 불쾌하고,
- (b) 행위자가 공표한 사안의 허위성과 타인에게 심어질 잘못된 인상에 대하여 알았거나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행위를 한 경우”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표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 *Time, Inc. v. Hill* 사건<sup>45)</sup>에서는 허구의 연극이 범죄피해자인 원고의 실제 경험을 재연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지 문제되었다.<sup>46)</sup>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언론기관이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불러일으키

44) *Cape Publication, Inc. v. Bridges*, 423 So. 2d 426 (Fla. App. 1982), review denied, 431 So. 2d 988 (Fla. 1983); *Howell v. New York Post, Inc.*, 612 N.E. 2d 699 (N.Y. 1993).

45) 385 US 374, 17 L ed 2d 456, 87 S Ct 534 (1967).

46) 즉, 원고의 집은 1952년 3명의 탈주범에 의하여 점거되었고, 원고(Hill)와 그의 가족은 19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1953년에 한 작가가 그 사건에 관한 소설을 펴냈는데, 몇 가지 사실은 완전한 허구였다. 그 후 소설은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1955년에 Life지는 연극의 사진과 그 기사를 실었는데, 위 연극이 원고와 그 가족의 실제 경험을 재연하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없는 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언론기관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진위를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만 언론기관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sup>47)</sup> 이 판결 이후에 나온 Gertz 판결에 의하여 이 판결의 법리가 수정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 (2) 프라이버시의 한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공적 인물의 사생활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허위보도의 경우와 달리 언론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49)</sup> 그 근거로 공적 인물은 ① 공개를 원했거나 공개에 동의했다는 점, ② 그의 존재나 직업이 이미 공적 성격을 띠는 점, ③ 언론은 대중에게 공익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항으로 된 것을 알릴 특권을 헌법상 보장받는다는 점 등을 든다.<sup>50)</sup> 그러나 유명한 영화배우라도 친구끼리 모여 노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사생활은 프라이버시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리고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보도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sup>51)</sup> 보도적 가치,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은 정보의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사회구성원이 어떤 사실을 아는 데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의 판례에서 영화회사가 뉴스영화의 일부분으로 원고 등 비만한 여자들이 살빼는 기구를 이용하여 체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한 경우<sup>52)</sup>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47) 이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뉴욕타임즈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 후 *Cantrell v. Forest City Publishing Co.*, 419 U.S. 245, 95 S.Ct. 465(1974)에서는 피고측이 공중에게 원고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48) Smolla, *Law of Defamation*, 2d ed., 2004, §10:16.

49) Prosser/Keeton(주 41), p. 862; 김재형(주 26), 132면.

50) Prosser/Keeton(주 41), p. 411.

51) Warren/Brandeis(주 40), p. 214에 의하면, 프라이버시는 공공의 이익 또는 일반적 이익이 되는 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52) *Sweenek v. Pathe News, Inc.*, 6 F. Supp. 746 (1936).

그러나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은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Diaz v. Oakland Tribune*, 139 Cal. App. 3d 118 (1983)에서는 대학 최초의 여성학생회장인 디아즈의 성전환 사실을 보도한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학생회장으로서 일정한 목적 하에 공적인 인물이 되지만, 성별은 뉴스가치가 없다고 보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였다.

한편 *Barber v. Time Inc.* 사건<sup>53)</sup>에서는 원고의 성명을 밝힐 필요가 있는지 문제되었다. Barber 여사는 희귀한 병에 걸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의 증상은 계속 먹어도 체중이 줄어드는 특이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진기자는 그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 신문에 보도하였다. 그 후 Time지는 '의학'란에 그녀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기사의 표제는 "굶주린 대식가"였고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의 아래에는 "탐욕스런 대식가 Barber, 그녀는 열 사람 분을 먹는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미주리 주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사적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이나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공중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성명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공적 기록(public record)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대체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기관이 소송기록에 있는 강간피해자의 이름을 보도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부정하였다.<sup>54)</sup>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 (1989)에서는 경찰이 공중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입수한 강간 피해자의 이름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수정 헌법 제1조에 부합하는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부정하였다. 문제된 정보가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이 배포한 보고서에서 나온 경우에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Macon Telegraph Publishing Co. v. Tatum* 사건<sup>55)</sup>에서는 침입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침대

53) 348 Mo. 1199 (1942).

54)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S. 469 (1975).

에 접근하는 순간 그를 총으로 쏘아 죽인 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56)</sup> 강간피해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소장이나 경찰 보고서 등 공적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 2. 독일의 인격영역론과 시대사적 인물

### (1) 인격영역론

#### (가) 개설

개인의 사생활에 침입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사생활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인격영역론(Sphärentheorie der Persönlichkeit)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격의 영역을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57)</sup>

#### (나) 인격영역의 구분

독일에서 인격권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Hubmann은 인격권의 보호범위로 개인영역(Individualsphäre), 사적 영역(Privatsphäre), 비밀영역(Geheimsphäre)을 들고 있다.<sup>58)</sup> 그 후 인격영역을 구분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인격영역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는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좀 더 간략하게 구분하는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ㄱ) Wenzel은 인격영역을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sup>59)</sup>

55) 208 Ga. App. 111, 21 Media L. Rep. 1116 (1993).

56) 조지아 주에는 언론이 성범죄의 피해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간비밀보호법(Rape shield law)이 있는데, 원고의 소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보통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57) Larenz/Canaris(주 21), S. 503.

58) Hubmann, Das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1967, S. 269. 또한 H.Hubmann, JZ 1957, 521, 524도 참조.

59) 이하는 주로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 1994, RN 5.29ff.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Dunz, BGB-RGRK, 12. Aufl., 1989, §823 Anh. I, RN 12ff도 마찬가지이다.

① 내밀영역(Intimsphäre 또는 Intimbereich)

내밀영역<sup>60)</sup>은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가장 좁은 인격영역으로서,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권리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포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가의 경우에도 내밀영역의 보호를 받고, 특히 선거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비밀영역(Geheimsphäre)

비밀영역<sup>61)</sup>은 이성적으로 평가를 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영역이다.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이 이에 속한다.<sup>62)</sup>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들이 비밀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직업적, 영업적인 기록도 비밀영역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sup>63)</sup> 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사실을 언제, 어떤 한계 내에서 공개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능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비밀유지의사가 있어야 비밀영역으로서 보호될 수 있고,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사적 영역(Privatsphäre)

사적 영역<sup>64)</sup>은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결혼 전의 이야기, 부부간의 다툼 등이 이에 속한다. 가족구성원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친밀성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적인 대화가 직업과 관련된 경우에도 사적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가도 사적 영역에 관하여 보호를 받는다.<sup>65)</sup>

사적 영역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60) Wenzel(주 59), RN 5.39ff.

61) Wenzel(주 59), RN 5.33ff.

62) 형법의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영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63) BGHZ 73, 120; BGH NJW 62, 32.

64) Wenzel(주 59), RN 5.46ff. 박용상, “표현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기업과 법(도암김교창변호사회 갑기념), 1997, 264면은 私事的 領域이라고 한다.

65) BGHZ 73, 120. 이 판결은 기민당(CDU)의 간부인 원고들의 사적인 전화를 도청한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경우에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보의 이익(Informationsinteresse)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해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영역에 관하여 공표하더라도 적법하게 된다.<sup>66)</sup> 가령 시대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사적 영역이나 가족의 영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문의 독자에게 오락 거리를 제공할 필요는 그와 같은 공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sup>67)</sup>

#### ④ 사회적 영역(Sozialsphäre)

사회적 영역<sup>68)</sup>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이에 속한다. 사회적 영역에 관해서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 영역을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적 영역(Öffentlichkeitssphäre)

공적 영역<sup>69)</sup>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인간생활의 영역으로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도를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촬영된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66) BVerfGE 35, 202(Lebach 사건). 한편 BGHZ 27, 284는 대화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상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격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67) OLG Hamburg NJW 1970, 1325. 이 판결에서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윌리엄 왕자의 부인인 원고의 이혼의사에 관한 신문 보도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프리드리히 윌리엄 왕자와 결혼함으로써, 결혼에서 출생한 아들과 함께 호헨졸레른 가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를 그 사생활을 언론이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있는 시대사적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녀의 남편은 공공의 삶에서 맡은 역할도 없고, 예술, 과학 또는 스포츠에 관하여 일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대사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호헨졸레른 가문의 최연장의 직계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를 시대사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프러시아의 루이스 페르디난트 왕자가 그들 중에 포함되는지도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역사는 현재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이익이 있는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호헨졸레른 가문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재의 시대사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적 또는 문화적 삶에서 지위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루이스 페르디난트 왕자가 실제로 독일 국민이 그를 부를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역사적 인물이 되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절이 있기는 하였지만, 독일은 50년 동안 공화국이었고, 호헨졸레른 가문은 황제 빌헬름 2세의 퇴위 이래 역사적 중요성밖에 가지지 않게 되었다.

68) Wenzel(주 59), RN 5.54ff.

69) Wenzel(주 59), RN 5.60ff. 공적 영역은 공개적 영역이라고도 한다.

ㄴ) 그러나 인격영역을 좀 더 단순하게 내밀영역, 사적 영역, 공공 또는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70)</sup> 내밀영역은 건강, 성별, 일기장에 기록한 개인적인 생각 등이 있다. 위 ㄱ)에서는 내밀영역과 비밀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두 영역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은 가족, 집과 부부생활을 포함한다. 사적 영역의 공표는 이익형량을 통해서 결정된다. 사회적 또는 공공 영역에는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 (다) 인격영역에 대한 침해

인격영역론은 인격영역을 구분하여 인격권에 의한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보는 것이다. 가령 내밀영역은 절대적 보호를 받고, 사적 영역은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하며, 사회적 영역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보다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내밀영역과 비밀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기도 한다.

독일에서 종전에 내밀영역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sup>71)</sup> 그러나 내밀영역에 대해서도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판결도 있었다.<sup>72)</sup> 독일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포르노영화에 출연한 배우에 대한 보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내밀영역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73)</sup>

그리고 비밀영역, 사적 영역 등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영역의 구분에 따라 해결할 수 없고 정보획득의 방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sup>74)</sup> 이 견해에 따르면 내밀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는 결과

70)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5. Aufl., 2005, 325.

71) BGH NJW 79, 647; BGH NJW 81, 1366.

72) BGH, NJW 1988, 1984, 1985; OLG Hamburg, NJW 1967, 2314, 2316; KG Berlin Afp 2004, 371.

73) BGH, Urteil vom 25. Oktober 2011 - VI ZR 332/09.

74) 그 이유는 첫째, 민주주의와 사법사회는 자유로운 정보와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것인데, “비밀영역”(Geheimsphäre)에 대한 절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예컨대 사진을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나 내밀영역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거래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Larenz/Canaris(주 21), S. 503f.

불법이 있는 것이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행위자가 어떻게 행위했는지가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위불법이 문제된다고 한다.<sup>75)</sup> 원칙적으로 사기, 즉 고의로 착오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 인터뷰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한다.<sup>76)</sup> 은밀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위법하다.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말을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공개적인 발언, 예컨대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대화, 강연 등을 은밀하게 녹음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sup>77)</sup> 그리고 대체로 사진을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도 위법하다. 사진을 유포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진이 유포될 위험이 있고, 또한 사진 촬영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sup>78)</sup> 강제와 강박에 의하여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강제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단/목적 형량을 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연사나 강연준비자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연을 공연하게 녹취하는 경우, 근로자를 공연하게 설치된 카메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한다.<sup>79)</sup>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획득의 방법과 유포된 사실의 종류를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sup>80)</sup>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획득한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게 될 수 있다.<sup>81)</sup> 그런데 진정한 사실을 적법하게 획득하여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적법성이 추정된다. 그리하여 그것을 금지시키고자 하려면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법하게 획득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추단된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세무사, 신용기관, 사용자, 종업원 등이 침묵의무에 위반하여 정보나 인격적 요소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추단된다.<sup>82)</sup> 어떤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75) 미국에서도 원고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 또는 사적 사항에 대한 침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한 수단과 정보를 얻은 피고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만일 피고가 사적 정보에 접근하는데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rosser/Keeton(주 41), pp. 854-856.

76) Larenz/Canaris(주 21), S. 504.

77) Larenz/Canaris(주 21), S. 504ff.

78) Larenz/Canaris(주 21), S. 506.

79) Larenz/Canaris(주 21), S. 507.

80) Larenz/Canaris(주 21), S. 508f.

81) Hubmann(주 58), S. 302ff., S. 306ff; Soergel-Zeuner §823 Rdn. 83; Larenz/Canaris(주 21), S. 508f.

82) Larenz/Canaris(주 21), S. 509f.

당사자에게 특히 손해를 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위법할 것이다.<sup>83)</sup> 예컨대 오래된 범죄를 보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즉, Lebach사건에서 살인사건의 범인이 출소하기 직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것이 문제되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인의 사회복귀 이익이 정보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인의 경우에 사생활을 보호할 것인지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왕자의 부부 문제와 이혼문제를 보도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이 있다.<sup>84)</sup> 그러나 독일의 전 총리인 슈뢰더가 아내와 문제가 있고 유명 TV 저널리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보도한 것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sup>85)</sup> 이 판결에서는 사생활 보도를 막을 만한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 (3) 시대사적 인물 법리

(가) 독일 회화적 예술과 사진 작품에 대한 작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저작권법’이라 한다)<sup>86)</sup> 제22조는 초상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23조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시대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촬영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제23조 제2항).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시대사적 인물을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과 상대적 시대사적 인물로 구분하고 있다.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은 사생활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에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이 있는 인물로서 군주, 대통령,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이 포함된다. 상대적 시대사적 인물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만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이 있는 인물이다.

독일 연방대법원 1965년 1월 15일 판결<sup>87)</sup>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 옆에 나치 친위대장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나치 친위대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과 초상권 침

83) Larenz/Canaris(주 21), S. 512.

84) BGH, NJW 1999, 2893, 2894

85) LG Berlin, AfP 2003, 174, 176; LG Berlin, AfP 2006, 394, 395

86) Kunst Urheber Gesetz (KunstUrhG).

87) BGH NJW 1965, 1374.

해를 인정하면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피촬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모나코의 캐롤라인(Caroline) 공주가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보도한 독일의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일련의 판결은 사생활과 초상권에 관한 중요한 선례이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연방대법원 1995년 12월 19일 판결<sup>88)</sup>은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 사건에 관한 것이다. 언론사들이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을 공표한 것이 그녀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사진들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캐롤라인 공주가 Saint-Rémy-de-Provence의 식당 정원에서 배우 Vincent Lindon과 함께 찍힌 사진. 이 사진에는 “Vincent와 그녀의 연애에서 가장 애정 어린 사진”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2) 캐롤라인 공주가 공공장소에서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 (3) 캐롤라인 공주 등이 공공장소에서 말을 타고 있는 사진, 그녀 혼자서 쇼핑하는 사진, Lindon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혼자 자전거 타는 사진, 시장에서 경호원들과 있는 사진, 오스트리아에 공개적으로 스키 휴가를 간 사진, Ernst August von Hannover 왕자와 함께 있는 사진, 파리의 집에서 혼자 떠나는 사진, 남편인 Ernst August von Hannover 왕자와 테니스를 치고 그들의 자전거를 내려놓는 사진, 그녀가 Monte Carlo Beach Club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진.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① 독일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대사적 인물들의 사진들은 피촬영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고 전시될 수 있다. 캐롤라인 공주는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에 속한다.
- ②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들의 사진들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에

---

88) BGHZ 131, 332.

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격권(기본법 제2조)보다 우위에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가치와 이익을 형량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사적 영역이 집 안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 장소라고 하더라도 분리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음식점 정원에서 촬영된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그 밖의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의 발행은 적법하다. 사진은 누구나 접근가능한 장소에서 촬영될 수 있다. 원고는 이러한 공공장소에 들어가서 대중의 일부가 된다. 원고는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로서, 대중이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거나 카페에 있는 것이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녀 자신의 삶에서 일상적인 행동이든지, 그것을 아는 데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원고는 프랑스에서 그러한 것처럼<sup>89)</sup> 독일에서 이러한 사진들의 출판이 금지되기를 원하지만, 독일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99년 12월 15일 결정<sup>90)</sup>은 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롤라인 공주는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이다. 캐롤라인 공주의 일반적인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이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진에 한하여 동의 없이 공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관심은 그들의 역할의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한 역할과 영향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대중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로 확장될 수 있다. 대중은 종종 우상이나 롤 모델로 여겨지는 개인들의 사적인 행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그들의 행동과 확실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89) 프랑스 민법 제9조는 “모든 사람은 그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사진들의 출판은 프랑스 민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90) BVerfG 101, 361.

캐롤라인 공주가 시장에서 보디가드를 동반하여 쇼핑을 하는 사진이나 사람이 많은 레스토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의 공표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일반대중으로 번잡한 공개된 장소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던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의 공표는 허용된다. 캐롤라인 공주가 혼자 말을 타고 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신청인의 사진들은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기본법 규정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진에 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 공주가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비록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도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공주는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다.

1998년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그의 가정과 그의 서신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권리를 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 두 권리는 상호 동등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도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다.<sup>91)</sup>

유럽인권법원은 2004년 von Hannover v. Germany 판결<sup>92)</sup>에서 다수의견은 캐롤라인 공주가 모나코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고, 공중은 캐롤라인 공주가 어디에 있으며 사생활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유명인이 사적인 장소에서 찍힌 가족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유명인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진이 찍힐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고, 분리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사생활의 정당한 기대를 갖는다고 보았다. 캐롤라인 공주는 모나코 왕가 소속이지만, 공적인 임무를 맡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91) Resolution 1165 (1998) of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Right to Privacy.

92)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4 June 2004 (Application no. 59320/00).

그 후 독일에서는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의 공개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진이 시대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93)</sup>

### 3.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sup>94)</sup>

(1) 사생활을 침해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sup>95)</sup>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제2항은 후단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발전된 것인데,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동의<sup>96)</sup>한 경우에는 사생활을 공개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제2항 전단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격권 침해가 허용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지 문제된다. 명예훼손에서 본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발달한 공인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공적 인

93) BVerfG NJW 2008, 1793.

94) 김재형,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인권과 정의 제399호 (2009. 11), 101면 이하 참조.

95)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제 1 권, 박영사, 1991, 514면.

96) 독일에서는 Einwilligung, 미국에서는 cons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승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물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인에 관한 보도인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대판 1998. 9. 4, 96다11327<sup>97)</sup>은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여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리콘을 이용하여 유방확대수술을 받는 것이 위험하다는 보도내용은 공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일반국민들이나 의사들에게 이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원고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로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집 54-2, 민 37)은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를 미행하며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

97) 공 1998, 2377.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하면서, 이익형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에서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들이 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고 이휘소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휘소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위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sup>98)</sup> 또한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 평전 사건에서 김우중이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sup>99)</sup> 최근에도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을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sup>100)</sup>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넓게 허용된다.

#### 4. 사생활의 보호범위

##### (1) 내밀영역

위에서 본 대판 1998. 9. 4. 96다11327(공 1998, 2377)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원심판결에서 “유방은 여성의 성적 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보존의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98)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하집 1995-1, 323).

99) 서울지판 1995. 9. 26. 85카합3438(법률신문 제2453호 13면).

100) 서울고판 2012. 3. 9. 2011나89080.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사항으로서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독일의 인격영역론에서 말하는 비밀영역에 관한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방확대수술은 비밀영역이라기보다는 내밀영역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밀영역이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강하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에 있는 사항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101)</sup>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극히 예외적으로 공개의 이익 또는 정보의 이익이 더 커야 할 것이다.

## (2) 사적 영역

(가) 대판 2013. 6. 27, 2012다31628<sup>102)</sup>에서는 재벌그룹 부회장인 원고 A와 그 약혼녀인 원고 B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또한 원고 B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또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원고 B의 초상과 원고 A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3, 4, 6 기사를 공표하고 이 사

101) 박용상(주 10), 442면.

102) 이 판결의 사건명은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등’이다.

건 제2, 5기사 중 위에서 본 사진 부분을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대판 2009. 9. 10, 2007다71 등 참조).”

이 판결은 초상권 침해에 관한 2006년 판례 법리를 사생활 침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②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③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사생활 공개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위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부회장은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신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A 부회장의 약혼녀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유명인의 약혼녀의 초상과 유명인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그 이외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은 원고 왕지현(예명: 전지현)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미혼의 유명 여자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의 결혼 예정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 집이나 호텔방과 같이 개인을 위하여 차단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는다. 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가 약화될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sup>103)</sup> 따라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사생활 보호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양가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가 위법하지 않다.

공적 인물의 가족이나 연인은 공적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생활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는 사생활의 공개가 허용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적 인물의 약혼녀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로서 위법하다

---

103)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집 54-2, 민 37).

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공적 영역

대판(전) 2011. 9. 2, 2008다42430(공 2011, 1997)은 언론보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피고가 원고 변호사들의 신상정보, 인맥지수, 승소율을 제공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건정보,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에 대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이 사건 사건 정보를 공적 정보로 보고 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므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사건정보는 변호사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보다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의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그러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은 이 사건 사건정보가 피고에 의하여 변호사 별로 재가공되더라도 변함이 없다.”<sup>104)</sup>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적어도 변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모든 변호사를 유명한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적인 인물로 보고 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까지 무조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의 규정, 변호사의 사회적 위치 등을

---

104) 그러나 인맥지수 서비스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산출된 인맥지수는 범조인 간의 친밀도라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갖는 정보”이고, “이러한 인맥지수에 의하여 표현되는 범조인 간의 친밀도는 변호사인 원고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파악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영위하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 법률수요자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산출된 정보도 피고의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그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한다.

고려해 볼 때 변호사업무와 관련된 한도에서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공적 존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4) 실명보도와 얼굴사진의 보도

언론에서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익명이나 가명으로 보도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판 2009. 9. 10, 2007다71(공 2009, 1615)에서는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sup>105)</sup>이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실명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①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②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실명보도가 허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2헌마652<sup>106)</sup>는 사법경찰관이 기자들에게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

105)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106) 공보 제210호, 654.

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다만 이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sup>107)</sup>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위 결정 내용은 적용해볼 수 있다.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하였듯이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5. 소결

사적 사항과 공적 사항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인데, 독일의 인격영역론은 인격의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인격권에 의한 보호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형화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인격영역론에 따라 사생활침해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생활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인격영역의 어떤 부분이 침해되었는지, 침해의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등을 상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도 사적인 모습, 특히 성관계 등 내밀한 영역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할 만한 공익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sup>108)</sup>

---

107) 이 결정은 나아가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 시 어떠한 개인정보보다 각인효과가 크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즉각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후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송에 공개됨으로써 찍힌 낙인 효과를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사 촬영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108) 2012년 프랑스 잡지에서 영국 왕세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에 관한 사진을 보도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영국 왕실은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2012년 9월 18일 프랑스 잡지 ‘클로제’ 측에 노출 사진의 추가 보도와 배포를 금지하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진

일반적인 부부생활이나 가족사에 관한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익형량을 통해 그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의 경우에도 사적 영역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는 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그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한편, 공인이나 유명인의 가족이나 연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의 남자친구가 공인인지 문제되었다. 김연아는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연아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김연아의 남자친구가 국가대표선수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보도하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IV. 결 론

공인에 관한 보도는 언론보도의 중핵을 차지한다. 공인에 관한 보도 없이는 언론이 지탱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공인을 많이 다루는 만큼, 공인에 관한 잘못된 보도나 공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도 높아진다. 한편 공인이 명예훼손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공인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기본적 임무이기 때문이다.

---

파일을 왕실에 돌려주는 한편 2000유로(약 29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잡지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2012. 9. 18.자(“佛법원, 케이트 노출사진 추가보도·재판매 금지”).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c%80%ec%9d%b4%ed%8a%b8+%eb%85%b8%ec%b6%9c%ec%82%ac%ec%a7%84+%ed%8c%90%ea%b2%b0&contents\\_id=AKR20120918210500081](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c%80%ec%9d%b4%ed%8a%b8+%eb%85%b8%ec%b6%9c%ec%82%ac%ec%a7%84+%ed%8c%90%ea%b2%b0&contents_id=AKR20120918210500081)).

미국의 공인 이론은 특히 언론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공인 이론은 미국의 헌법과 판례법을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미국과는 헌법과 법률이 다르고, 명예 등 인격권이나 언론에 관한 일반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인 이론의 영향으로 우리 판례에서도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를 점차 넓게 인정하고 있다. 장차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가 허용되는 유형이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공인의 범주를 고위 공직자나 유력 정치인에 한정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등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인의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다종다양한 공인이 있을 수 있다. 공인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발달한 전면적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 등의 구분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시대사적 인물에 관한 논의도 좋은 참고가 된다. 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 현실에 맞는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어느 한쪽의 이론에 숙고 없이 경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인의 경우에도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영역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인의 가족이나 연인 등 주변 인물은 공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가족 등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별 표.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인 관련 조정사건

(2012. 1. 1 ~ 2014. 9. 30.)

연도	신청인 분류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12	국회의원	49	18		15			16	
	법조인	5		4				1	
	4급 이상 고위공무원	28	12		9			7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47	16	2	9			20	
	정당정치인	71	20		16	2		33	
	연예인	76	2					74	
	공공기관장	2			2				
	<b>소 계</b>	<b>278</b>	<b>68</b>	<b>6</b>	<b>51</b>	<b>2</b>		<b>151</b>	
2013	국회의원	46	21	1	12		1	11	
	법조인	3			3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3	5		3			5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64	35	2	8			19	
	정당정치인	22	13	4	1	3		1	
	연예인	6	4					2	
	공공기관장	39	1					38	
	<b>소 계</b>	<b>193</b>	<b>79</b>	<b>7</b>	<b>27</b>	<b>3</b>	<b>1</b>	<b>76</b>	
2014	국회의원	19	5		2			7	5
	법조인	0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3	8					1	4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20	12		7			1	
	정당정치인	44	19	3	13			9	
	연예인	4						4	
	공공기관장	0							
	<b>소 계</b>	<b>100</b>	<b>44</b>	<b>3</b>	<b>22</b>			<b>22</b>	<b>9</b>
<b>총 계</b>		<b>571</b>	<b>191</b>	<b>16</b>	<b>100</b>	<b>5</b>	<b>1</b>	<b>249</b>	<b>9</b>

## 지정 토론

---

권 석 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권 오 승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지 정 토 론 (1)

## - 공인 보도와 인격권에 붙이는 몇 개의 물음 -

권 석 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 1. ‘사이버망명’ 논란과 ‘혼외자’ 의혹 사이

대검찰청은 9월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검찰과 포털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특정 단어를 검색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같은 달 16일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은 조치였습니다. 뒤이어 카카오톡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카톡 대화내용을 누군가 들여다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이버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 사용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모바일메신저로 대거 옮겨간 것입니다. 결국 다음카카오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같은 ‘사이버검열’ ‘사이버망명’ 논란은 이번 세미나 주제인 ‘공인 보도와 인격권’과 밀접합니다.

이번 주제는 또한 지난해 불거졌던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의혹과도 닿아 있습니다.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는지 여부가 그의 공적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의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공인 보도 논의는 사이버망명 논란과 혼외자 의혹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재형 교수의 발제에 몇 가지 물음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 2.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김 교수가 제시한 “공인에 대한 보도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제도권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나아가 SNS라는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SNS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인의 인격권도 소비재가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연예인, 스포츠스타는 인격권의 훼손을 감수하는 대가로 권력과 사회적 명예,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 아닐까. 연예인의 경우 과거사를 둘러싼 악평(惡評)도 힘이 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교수의 지적처럼 공인의 내밀영역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인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인의 내밀영역 역시 ‘거실의 영역’ ‘안방의 영역’ ‘화장실의 영역’ 등 구체화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만약 길거리가 아닌 집안에서 같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동영상에 담겼다면 보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은밀한 ‘내밀영역’이라고 해도 공적 활동과 관련 있는 때에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공인의 성관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보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 의혹이나 성 접대 동영상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3. 공인 사생활 보도, 어떤 기준이 더 필요한가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보도의 맥락과 상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그 보도가 나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관련 핵심 인물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면 정치적 저의나 배경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생활 보도는 특정인을 공격하고 몰락시키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논문 표절 시비 등은 그러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는 자사의 보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 사회도 사생활 보도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공론의 장이 음모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4. 공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앞서 거론한 내용이 언론사에 관한 것이라면 공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도 다뤄져야 합니다. 언론 보도와 공인의 자세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만약 공인의 자세가 적절치 않다면 언론 보도 역시 오버슈팅(overshooting)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세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고소·고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니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대해서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린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소송 원인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나 위협 소송 등 소송 권한의 남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심석태, “한국 언론의 품격”)

이처럼 공인이 소송 등을 통해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한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다소 지나친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할 경우 해당 매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보도를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언론 보도→과잉 대응→과잉 보도→과잉 대응의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만 키워가는 셈입니다. 언론과 공인 양쪽 모두 어떻게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5.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보장할 길은 없나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인격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두 가치의 균형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았다면 형성되지 않았을 명예, 따라서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명예인 ‘허명(虛名)’을 보호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의 잣대를 대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받아쓰기’ 보도, ‘부풀리기’ 보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 공인에 대한 보도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인과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인이란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의 ‘갑(甲)질’에 그칠 가능성이 큼니다. 보도가 갖는 공익적 가치와 개인이 안게 될 피해를 신중하게 비교한 뒤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보도 내용을 다듬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종국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정부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언론의 책임감입니다.

## 지 정 토 론 (2)

권 오 승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오랫동안 기자로 언론사에 근무했지만 언론 윤리나 언론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언론 분쟁에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어렴풋이 이해를 하게 됐지만 오늘 참석하신 많은 기자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례들을 보며 여러 언론인들이 현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언론사에 대한 언론분쟁 예방교육의 필요성

이상록 기자가 쓴 ‘언론분쟁 뛰어넘기’라는 책에서 언론분쟁에 휘말렸던 기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언론분쟁을 기자 생활 최악의 순간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언론분쟁은 열악한 언론사의 교육 환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언론사의 경우 더욱 열악한데,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해 펴낸 「국내 연예저널리즘의 현황과 품질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예 뉴스는 대부분 인터넷이 주도하고 주요 3~5개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5~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예뉴스는 주요 아이템이 가십거리이고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과 직결되는데도 기자 대상 설문에서 많은 연예기자들이 기본적인 저널리즘 규칙이나 언론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 기사를 보면 기사 작성 수준이나 인격권 침해의 수준이 심각하게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분쟁 예방교육이 자주 실시된다면 이로 인해 기자들이 좋은 보도를 하고 언론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인의 개념과 판단 기준의 확립 필요성

한편 우리나라의 공인 제도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신분 기준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용 기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을 위한 진실의 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두되 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의 심사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보도 내용의 공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공인 관련 언론보도의 판결이 법관의 역량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의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인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인 범위에 대해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기업인들의 영향력은 유력 정치인보다 광범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업인을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공직자 못지않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2013년도 언론관련 판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년도 언론관련 판결 가운데 법원에서 공직자는 모두 16건 중 8건(50%)이 원고 승소 했고, 기업의 경우 12건 중 5건(42%)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아닌 기업인의 경우 4건의 재판 중 일부승소이기는 하나 모두 승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인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으로 취급해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공인이라는 용어의 정리 필요성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고위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직자, 연예인 등을 공적 인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미국에서 public official을, 공적 인물은 public figure를 직역한 것 같은데 이들을 포괄할 용어를 개발해 국민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언론의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공동 노력 필요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던 당시에 비하여 지금의 언론보도는 자체적으로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전 국회의장 성

추문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예전에는 관련 장소나 인물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했으나 지금은 이니셜조차 쓰지 않는 등 의식이 상당히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대응이 현재 미흡합니다. 모 경제 신문의 논설위원이 1인 TV회사를 만들었는데 시청자 수가 웬만한 언론사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SNS는 선거에서 유력한 정보소통공간이며 블로그는 뉴스를 유통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미디어와 같은 유사언론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언론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언론학계, 법조계, 정치계, 언론인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도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의 언론조정신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국가기관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 집권 5년 간 조정 신청 건수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때는 752건으로 이전 정부 때보다 6배 늘어났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직자와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논설실장이 노 대통령이 행정력의 대처로 언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논평했던 생각이 납니다.

현대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명예훼손이라 합니다. 저는 언론인 시절부터 지금 중재위원까지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을 만났는데 언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언론인 못지않게 깊고 심오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법조인, 학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읽은 언론학자의 칼럼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는 동안 많은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수백 년간 언론의 자유와 자유 언론을 지극히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학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의 치밀정연한 논리와 열정에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국가가치 중심체제로 언론 자유를 상정했을까? 알면 알수록 열면 열수록 나쁜 일이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불리던 언론을 지식인들이 왜 그토록 절실히 지키려 했을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지 정 토 론 (3)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공인 관련 보도의 언론분쟁 현황

언론에 의한 공인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문 결론부분에서 공인보도가 대단히 중핵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 조사에 따르면, 공인보도 허용의 확대 또는 확장은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의 언론을 단순히 건전한 여론형성기관으로 판단하다가 점차 권력의 남용을 감시비판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파수견의 기능을 인정하는 시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강화가 공인보도의 허용 폭을 확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인에 대한 보도 정도를 본다면 상당한 부분 보도가 허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의 공인보도 쟁점처럼 많이 논의되어 오면서도 아직도 무엇인가 미해결 상태로 애매하게 남아있는 쟁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인보도 쟁점은 현재까지 판례의 집적이 꽤 이루어져 있으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명확한 해결의 기준이 드러나지 않는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은 보도에 있어 항상 불안한 입장에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언론관련 보도로 인한 소송에 있어 일반인의 승소율이 약 75% 이상 정도인데 반해 공인의 경우 승소율은 약 40% 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서도 공인이론이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판결에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서 다르게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인보도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해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또는 공적 인물)이 누구인가를 일의적으로 단언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인에 대한 판단의 기준틀이 제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에 대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력이 대단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 미국의 공인 관련 판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언론은 지속해서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언론 스스로 공인이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법부는 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발제에서도 언급하셨지만 1974년 소위 거츠(Gertz)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사인과 공적 인물을 구분하면서, 공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공적인 논의에 설득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those who assumed roles of special prominence in the affairs of society [and] occupy positions of such persuasive power and influence that they are deemed public figures for all purposes)으로, 그리고 제한적 공적 인물을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공적 논쟁의 전면에 나선 사람”(people who have thrust

themselves to the forefront of particular public controversies in order to influence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involved)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5 (1974)).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의가 이후의 유사한 하급심 판결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하급심 연방법원들은 공적 인물을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미디어에 접근한 사람(who have (1) voluntarily participated in discussing the controversy, and (2) have access to the media to make their views known)으로 이해했습니다(Barry v. Time Inc., 584 F. Supp. 1110, 1113-22 (N.D. Cal. 1984); Reader's Digest Ass'n v. Superior Court, 37 Cal. 3d 244, 254 (1984)). 또한 공적 인물이란 공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건들에 자발적이거나 또는 우연히 관련되어 유명해진 사람으로 이해되었습니다(Carson v. Allied News Co., 529 F.2d 206 (7th Cir. 1974)).

이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 인물에 대한 정의는 공적 인물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준을 상황에 맞게 판결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공적 인물이 누구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공적 인물이론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나라의 공인 관련 판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부는 공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판결들에서 공인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의 예를 들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공인에 대한 평가

번호	판결	공인관련 이해(평가) 요지
1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가합9230 판결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고 이휘소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	서울지방법원 1995.6.27. 선고 95가합3438 결정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3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4	서울지방법원 2001.5.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국민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5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6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7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그 기고문의 게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8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판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므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	-----------------------------------	--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우리 사법부의 공인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이란 국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도덕적이고 정당하게 공적 활동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감시·비판·견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아직은 공인을 공직자와 유사한 인물처럼 이해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고자 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유명해진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단순히 몇 건의 판결례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우리 사법부의 공인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을 상정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편적인 공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는 공인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직도 공인 보도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남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법부도 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의 거츠(Gertz)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공인에 대한 정의와 같이 하급심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법부에서도 지적하듯이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 정 토 론 (4)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공인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먼저 ‘공인’의 개념정의 및 범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인’ 개념이 언론보도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는 물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정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인’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각종 개념(‘공적 인물’, ‘공적인 존재’ 등) 역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인’을 ‘공적 인물’의 줄임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 중에는 ‘공인’과 ‘공적 인물’을 구별하여 실시한 경우도 있고,<sup>1)</sup>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 대신 이를 총칭하여 ‘공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판결이 있기도 하며,<sup>2)</sup>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공적인 존재’와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을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언급한 판결<sup>3)</sup>도 있는바 관련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공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중에는 정치인<sup>4)</sup>, 공무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공 2005. 6. 1.(227), 882] 등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집50(1)민, 43; 공 2002. 3. 15.(150), 522],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미간행).

3)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미간행) : “그런데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계상 침해행위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 2003. 8. 15.(184), 1683], 대법원 2005. 5. 27. 선고

원<sup>5)</sup>, 언론인(앵커, KBS 책임 프로듀서)<sup>6)</sup>, 각종 단체<sup>7)</sup>, 언론기관<sup>8)</sup>, 연예인, 운동선수<sup>9)</sup> 등을 공인 내지 공적 인물로 본 것이 있고, 반면 택시노조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은 공인 내지 공적 인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sup>10)</sup>이 있으며, 위 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만으로 여전히 ‘공인’의 범위를 가늠하기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과거에 판결을 통하여 ‘공인’으로 취급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항상 ‘공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은 일응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본 판결도 다수 있지만, 직위, 직급, 업무 등과 무관하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언론법상 개념의 ‘공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sup>11)</sup>).<sup>12)</sup> 이러한 점에서 향후 ‘공인’의 범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인보도의 허용 범위와 한계 설정의 기준

한편, ‘공인’ 개념이 언론보도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분적 요소에 관한 개념이 언론보도의 범위

- 
- 2004다69291 판결(미간행) 등
- 5)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 2003. 8. 15.(184),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 2003. 9. 1.(185), 177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공 2005. 6. 1.(227), 88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미간행) 등.
  - 6)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공 1998. 6. 15.(60), 1575],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집50(2)민, 378; 공 2003. 2. 15.(172), 425] 등.
  - 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공 1998. 9. 1.(65), 220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집50(1)민, 43; 공 2002. 3. 15.(150), 52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 2003. 3. 15.(174), 688],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 2006. 5. 1.(249), 713] 등.
  - 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공2008상, 77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공2008상, 779].
  - 9) 서울고등법원 1994. 4. 14. 선고 93나43059 판결(미간행),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각공 2006. 6. 10.(34), 1211], 서울중앙지법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미간행) 등.
  - 1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미간행) 등.
  - 1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90113.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90113.html)(2014. 10. 16. 검색)
  - 12) 같은 취지에서 미국에서의 'Public Official'은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실질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을 가진 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김봉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와 그 한계 - 미국의 ‘공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49면).

와 한계를 결정짓는 핵심적 징표가 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공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이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분적 요소(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표현 내용(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표현 내용과 보도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보도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표현 내용과 보도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도 대상이 공인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① ‘공중에 잘 알려진 고위공직자나 연예인(신분적 요소)’과 관련된 ‘사생활(불륜, 혼외자, 연애 등) 보도(표현 내용)’와 ② ‘공중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신분적 요소)’이 저질렀다는 ‘연쇄 성폭행 혐의 보도(표현 내용)’ 중 어떠한 것이 보도의 가치가 있고 보도의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신분적 요소보다는 표현 내용이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sup>13)</sup> 보도 범위의 한계를 판단하는 이러한 기준은 아래에서 보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한계 설정의 필요성

전통적인 언론법의 쟁점으로서의 공인에 대한 사실보도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이론(‘공익성’과 ‘진실성 내지 상당성’)은 다수의 판결례가 축적됨으로써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한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3)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공인으로 취급하여 신분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그와 같이 논리 구성을 취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의 공공성을 통하여 보다 언론보도의 허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인에 대한 사실보도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에서는 대부분 ‘공익성’보다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심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와 달리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공익성(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지가 주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공인에 대한 사생활 보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실시한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이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인에 대한 사생활 보도가 문제되었던 각종 사례(예컨대, 재벌그룹 부회장과 약혼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보도한 사례, 아나운서 출신의 여성 방송인의 성교행위가 찍힌 동영상의 공개되었다는 보도에 관한 사례, 박사학위 논문 조작 및 고위공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던 여교수의 누드 사진을 보도한 사례 등)나 최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인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예컨대, ‘연예인 A와 연예인 B가 교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각종 사진을 특종으로 배포하는 보도 등)를 생각해 보면 과연 위 판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는 기준에 들어맞는 사안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점에서 현재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종래부터 언론·출판의 자유가 매우 두텁게 보장되었던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sup>14)</sup> 위 각 사례에서 보도된 내용이 위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래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보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도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대중의 관심’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 온 연예인,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을 이유로 한 자신의 사생활 보도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14)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 165 결정(헌집3, 518),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6520 판결(미간행) 등 참조



**연구 발표**

---

## 판례에 나타난 공인 개념

장 원 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 연구 발표

## - 판례에 나타난 공인 개념 -

장 원 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충돌되는 이 두 조항에 따라 언론보도와 보도대상이 같음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이 판결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보도의 대상자가 공인인지 또는 사인인지 구별해야 하고, 비록 공인이라 하더라도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판례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살펴본 판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갈등에 관련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수집한 95건의 판례(판례수:142건) 중 공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실관계만 따지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사건을 제외한 89건(판례수:133건)과 2009년 이전의 사건 중 1건을 대상으로 했다.

## 1.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 고위 공무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원고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시장 개방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른바 ‘공인’에 해당하고,…… 쌀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경쟁력이 약한 국내의 쌀농사 산업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합116282 판결)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법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이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사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내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정판결과 형사판결의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544341 판결)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었던 원고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보고도 없이 끼워 넣었고,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정위 고위간부인 원고가 방판법 개정이라는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고위 공직자인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을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56939 판결)이라며 원고가 고위 공직자임을 인정하였지만 보도내용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검사인 원고들이 수사과정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김경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방법으로 새벽 4시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을 무기로 삼아 김경준을 협박하거나 설득·회유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검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09나14267 판결)며 원고들을 공직자로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인 원고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8354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로까지 보인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하남시 시의원 시절 하남시 미관지구에서의 용도변경제한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서 불법특혜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받았고, 위법하

게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하남시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공직자인 원고의 시의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하남시민 등의 알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08나4683 판결)며 원고를 공직자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양시의원인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고양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하였고,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시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가단6328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정부기관의 장

원고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시절에 한 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일부 발언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①이 사건 강연 무렵 여러 언론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고위 공직자가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고 문제로 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 ②그에 따라 원고가 당시 여성부에 이 사건 강연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여성 비하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가합101689 판결)라며 원고를 고위 공직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정치인

야당의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인 원고가 ‘옛 민주당 몫 대의원 40%에 대한 선정권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전대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되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보도 당시에 민주당의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활동과 경선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적인 인물인 점,……언론매체의 공인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28099 판결)며 원고를 공적 인물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대학 총장

대학 총장인 원고가 연구결과물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로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대학의 총장인 원고가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저자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수증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며 원고가 공적 존재임을 인정하여 언론사에 대한 청구는 정정보도청구만 인정하였고, 기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다.

또 서울대 총장을 지낸 원고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여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인 피고의 보도의 공익

성, 공공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지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단276740 판결)이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전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원고가 반미좌파 성향의 편향된 시각으로 천안함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흑세무민하였다고 매도하면서 언론자유를 방패삼아 천안함 사건 조작설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경력으로 인하여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하여 천안함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공표함으로써 대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시한 천안함 침몰에 관한 견해는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62739 판결)고 원고가 비록 비서관을 그만 두었지만 공적 존재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민정수석비서관인 원고 이\*\*과 전 의전비서관인 원고 정\*\*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원고 이\*\*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을 등을 역임한 원고 정\*\*가 소외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바, 이는 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가합69079 판결)라며 역시 전직 비서관인 원고들이 공직자임을 인정하였지만 각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국회의원 후보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 원장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고가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문제 삼은 부분을 포함하여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공직자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서 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취지를 두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도 공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하였다고 판단”(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가합30936 판결)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방송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해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 ‘패륜을 즐기는 정신 나간 여자’라는 등의 비방성 표현을 사용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라디오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공인’의 범주에 포섭하여 볼 수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가합79614 판결)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방송인인 원고가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폭행·감금하였고, 그 사람 명의로 사과 메일을 작성했으며, 그 사람과 6개월 전부터 동거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1. 4. 선고 2012나53224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 그룹 부회장

모 그룹의 부회장인 원고 정\*\*과 약혼자인 원고 한\*\*의 결혼을 위한 가족 상견례 행사와 데이트 장면 등을 불법 촬영 보도하면서 결혼계획과 약혼자 원고 한\*\*의 실명, 이혼 경력 등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정\*\*은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한\*\* 역시 원고 정\*\*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라고 하여 원고들이 공적 인물임은 인정하였다. 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다.

## 방송사 국장

방송사 국장인 원고가 전주시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공사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의 중단을 부탁하거나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방송사의 고위 간부인 데다가, 사회적인 논쟁거리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을 장기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갖는 공적인 인물”(광주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25 판결)이라며 원고의 공적 인물을 인정하였고, 기각판결을 하였다.

## 언론사 대표

언론사 대표인 원고가 자살한 여성 연예인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여론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은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09가합55315 판결)며 원고의 공적 인물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물리쳤다.

## 연예인

가수이자 배우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22억여 원을 받고도 광고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의 시계 제작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를 대주주 겸 광고모델로 내세운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비위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부실화된 결과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 및 보도행위의 주요한 목적 또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20338 판결)며 원고에게 유명 연예인이라며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허위 사실의 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대통령 조카사위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비젤 주식을 메릴린치에게 매도하여 7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후 비젤을 폐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고, 원고가 추진한 사업 등이 언론에 의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으로 세인(世人)의 관심을 받아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32404, 2012가합32411(병합), 2012가합32428(병합), 2012가합32435(병합) 판결)이라며 원고에게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정정보도는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은 기각하였다.

## 2.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방송사 최대 주주

방송사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국내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고, 배\*\*으로 하여금 신\*\*에게 정보교육을 하도록 시켰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기사삭제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사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 전직 구의회 부의장

원고가 용산구의회 부의장 시절 자신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용산구에 매각했다는 보도는 과장보도라며 제기한 정정보도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용산구에 매도할 당시에는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사임한 후 이미 7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는 사인의 지위에서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어느 정도 공적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앞서 본 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가합27092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보지 않았고,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 은퇴 연예인

은퇴한 탤런트인 원고가 인터뷰 의사가 없고,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원고가 탤런트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게재

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4년부터 1년간 CGN TV에서 매주 한 번씩 ‘차\*\*의 즐거운 책임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인이라고 주장하나, CGN TV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특정 교회의 위성방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 환경운동가

환경운동가인 원고가 자신이 벌인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운동으로 인해 2조5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보았다고 과장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비록 환경운동가로 정부와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감시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자 신분은 아니며 더구나 정부의 고속철도공사에 대하여 환경파괴를 염려하여 반대운동을 하는 등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지위에 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감수하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대단히 의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202834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보지 않고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 3. 결 론

살펴 본 판결문에는 ‘공인’을 ‘고위 공무원’, ‘고위 공직자’, ‘공직자’, ‘공인’, ‘공적 인물’, ‘공적 존재’, ‘유명 연예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sup>1)</sup>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sup>2)</sup>의 규정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

1)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2]]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교육장 및 교육위원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본조제목개정 2009.2.3.]

2)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방송인의 경우도 공인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그룹 부회장, 방송사 국장,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조카사위라 할지라도 세인(世人)의 관심을 받는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한 경우와,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공중파 방송사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똑같은 전직 공무원일지라도 자리를 떠난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과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처리한 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였고, 자리를 떠난 지 7년 이상 된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은퇴 연예인의 경우도 비록 공식은퇴 이후 잠시 선교 목적의 위성방송에 출연했다 하더라도 공식은퇴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름이 조금 알려진 환경운동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3조의2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들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지도자, 유명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유명 예술가, 재벌 회장, 당시 세인의 관심을 받는 사람 등을 공인으로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

##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 종합 토론

### ◆ 토론 자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장 진 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김 상 우 (JTBC 보도부국장)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 동 수 (MBN 사회2부 부장)

정 철 운 (미디어오늘 기자)

조 정 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 ◆ 사 회 자

유 의 선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 종 합 토 론

◆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인 개념의 모호성

공인에 관한 정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론을 인용하려 해도 논란이 많고 미국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유럽인권법원 등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타납니다. 캐롤라인 공주 사건을 예로 들면, 독일 법원은 시대사적 인물이라 해서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넓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도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공익 개념에 관해서 나라마다 판단이 다름에 기인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 전 대통령의 부인에 관한 보도에서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한 바 있습니다. 다른 예로, 미국 거츠 판결에서 인권 변호사를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취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공적 존재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인에 관한 범주를 미국보다 넓게 인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공인을 명확히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인의 유형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차별적 접근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인 사생활 보도의 허용 범위 설정을 위한 제안

공인의 사생활 공개 허용 범위 또한 문제입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사생활을 내밀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이라도 동의 없이는 보도가 불가능하며 동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영역에 관해서는 동의하면 보도할 수 있고 공인일 경우 동의가 없어도 허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적영역

에 대한 보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세밀히 접근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관한 보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기 때문에 유명인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관한 보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아이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실명·학교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도로 인한 언론의 책임 여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좋은 보도인지 여부는 법적 책임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인격권 침해 없는 보도가 언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 조 정 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 공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공인의 범주와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는 사람만을 공인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인 중에서도 방송언론인은 공인으로, 신문언론인은 공인이 아닌 쪽으로 -세금을 급여로 받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방송인 중에서도 KBS나 MBC 같은 방송사 직원은 공인으로, 민영방송사나 민영 언론사는 사인 또는 유명인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前)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와 관련해 아이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 혼외자인지 여부였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관련 논쟁에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공인의 자격을 부여해서 의문점을 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에서 ‘공공’의 개념은 무엇인지, 누구의 관점이고 누구의 이익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인의 범주와 관련한 제안은 일반적 관념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은 국적을 받는 사람이거나 ‘공무원’에서의 공(公)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와 같이 분류한다면 유명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유명인을 따로 분류해서 공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거나 공인과 똑같이 취급할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 공인 여부보다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가 더 중요

이번과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론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아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나 공익성을 고려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으로 해결하는 것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공인으로 보더라도 그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책임을 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 해서 일도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공익성이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내밀영역이 아닌 공인의 사적영역은 공개 가능

공인의 혼외자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법적으로 깊이 검토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외관계 자체는 성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내밀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관계의 결과로 자녀가 생겼다면 그 사실 자체로 이미 내밀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그 아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내밀영역이 아니고 사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에 진입한다는 독일의 판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여자 테니스선수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역시 유명한 재력가라는 추측이 있어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테니스선수의 남자친구가 아버지라고 지칭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독일 법원은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자체는 내밀영역에 속하므로 보도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독일에서의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 또는 미국에서의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총장에 대한 보도는 극히 내밀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 보호의 문제가 남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중요성이 평가의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수인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 장 진 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저의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만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다른 정부부처의 차관 정도나 대기업 총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혼외자가 있는 경우,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인 영역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정 철 운 (미디어오늘 기자)

우선, 2009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 칼럼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사생활의 문제가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인가라는 점이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공직자라도 사생활의 문제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배웠습니다. 결국, 관건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인 것 같습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에 따라 사생활 보도가 정당한지, 위법한지 결정됩니다. 문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갖는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인데 그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판단의 주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는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 권한은 판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의 경우, 다섯 명의 중재위원들이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은 조정대상 보도가 평균적인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지 합의를 통해 결론 내리게 됩니다.

#### ◆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공공성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불가피성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익성(혹은 공공성)’과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요구합니다. ‘공익성’ 요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면 일단 공공의 관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정 조직 내 사람들만의 중요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나 아파트단지 관리문제처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지라도 해당 지역 내 사람들에게 중대한 관심사라고 한다면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도의 대상, 주제, 방법 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언론분쟁의 특성상 사후적 판단에 그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 김 상 우 (JTBC 보도부국장)

##### 공인 주변 인물의 초상권 문제

공인이나 공적 인물 관련 보도 시, 공인의 주변 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보좌관이라든가 공인의 아들 같은 사람이 뜻하지 않게 찍혔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공인과 공인의 주변 인물은 공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판단기준의 모호함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입구나 법원·검찰청 현관에서 많은 취재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 장소에 걸어 들어옴으로써 촬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기자들은 간주합니다. 이처럼 그 취재물을 오락 프로라든가 당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절차의 본질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조하다보니 중재부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재부가 언론사의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명백히 잘못이 있으면 중재부에서 그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중재부가 권위를 가지고 적절한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공인의 주변 인물은 원칙적으로 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인격을 갖기 때문에 공인의 자녀라고 하여 당연히 공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상권 관련 묵시적 동의 판단의 어려움

묵시적 동의 문제는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판결을 소개하면, 어떤 배우가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심한 장면이어서 배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는 것을 보고 배우가 살짝 웃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배우가 기자를 보고 웃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기자들 곁을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사안에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동의를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의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누군가 지나갔든지 스튜디오에 방청하러 왔는데 촬영된 경우입니다. 방청 중에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은 TV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도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묵시적 동의 인정은 신중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혔다는 것은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초

상권이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라면 충돌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정확히 해야 하겠지만 어떤 장면을 찍는가가 핵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초상권과 언론의 자유가 대칭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정심리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부는 피해자 측이나 언론사,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진행에 관하여 중재부장은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리에 관해서 중재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심리 전과 후에 그 사안에 관해서 중재부의 위원들과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각 중재부에서 재차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 임 동 수 (MBN 사회2부 부장)

##### 중재부 구성에 관한 새로운 제안

앞선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저도 중재부가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능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뜻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정결과에 대해 언론사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의신청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중재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권위 있는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참여조정·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현재 중재부는 다섯 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현직 부장 판사가 중재부장을 맡고, 언론계 출신이나 법조계, 학계에서 덕망 있는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넓은 의미에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특정 전문 사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중재실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 의 선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이상으로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과 네 명의 지정토론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MEMO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 MEMO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 MEMO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